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. 1.] [조례 제6671호, 2022. 4. 13., 일부개정]


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"참전유공자"란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5. 2. 25, 2019. 1. 1,, 2022.4.13.>
 - 1. 삭제 <2022.4.13.>
 - 2. 삭제 <2022.4.13.>
- **제4조(지원사업)** 부산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 - 3.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 - 4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, 지급절차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. 1]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2. 25>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2019. 1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2.4.13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